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12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120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18가합564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 B

원고, 항소인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윤성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윤상구

피고, 피항소인 2.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한상규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이강혁

3. F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의 관리인 F의 소송수계인 F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남영

피고 2 보조참가인 G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한상규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이강혁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18가합56442 판결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D의 각 항소,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D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피고 D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확장청구 및 선택적 청구 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D는, (1) 원고 A에게 1,005,341,913원 및 그중 7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원고 A는 이 법원에서 대여금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여 대여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 B에게 532,0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원고 B은 이 법원에서 2017. 11. 5.자 대여금 49,500,000원의 청구를 제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1) 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7. 8. 25.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E은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5. 접수 제405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1)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2017. 4. 5.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회생채권은 827,573,350원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 D는, ① 원고 A에게 955,841,913원 및 그중 7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B에게 41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원고 B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원고 C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①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2017. 8. 25.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 E은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5. 접수 제405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①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2017. 4. 5. 제1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②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회생채권은 827,573,350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D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2항의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별지 포함)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 다음에 “이후 피고 F은 2020. 12. 7. 회생절차종결결정(위 법원 2020회단10058호)을 받고, 2022. 7. 5. 피고 F을 소송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의 “955,841,913원”을 “1,005,341,913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 D가 갑 제14호증의 1 기재와 같이 M의 원고 B에 대한 2017. 8. 4.자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갑 제16호증의 1 기재와 같이 N의 원고 B에 대한 2018. 1. 10.자 1억 4천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각 연대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차용증)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 M가 2017. 8. 19. 원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된 M는 실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차량 내비게이션 상품명에 불과하고,

채무자란의 M 이름 옆에는 I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채권자란의 원고 B의 이름 옆에 원고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의 사정과 피고 D는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자신의 인영은 원고 B이 임의로 피고 D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측될 뿐 자신은 위 차용증의 작성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의 위 주장과 같은 주채무(M의 원고 B에 대한 위 1억 원의 대여금채무)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6호증의 1(차용증)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 N이 2018. 1. 10. 원고 B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서 채무자란의 N 이름 옆에는 피고 D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채권자란에도 원고 B 이름 옆에 원고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의 사정과 피고 D는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자신의 인영은 원고 B이 임의로 피고 D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측될 뿐 자신은 위 차용증의 작성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의 위 주장과 같은 주채무(N의 원고 B에 대한 위 1억 4천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주채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갑 제87호증과 관련된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A는, 갑 제87호증에 따르면 피고 D가 2017. 당시 위 원고에게 37억 원의 차용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위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여금채무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7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17.경 위 원고에게 2017. 11.까지 총 37억 원의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87호증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 6%(연 72%)의 비율에 따른 이자로 차용원리금을 계산하거나 원본의 100%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용원리금을 계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적용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연 25%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갑 제87호증에 근거하여 위 피고가 2017. 당시 위 원고에게 37억 원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차용금 변제주장에 대하여

1) 피고 D의 주장내용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들을 살펴보면 피고 D는 원고 A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157,863,027원 초과하여 변제한 상태이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B의 경찰진술과 법정증언 내용 및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가 원고 A에게 부담하는 대여금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 A가 아니라 원고 B이다. 따라서 위 초과 변제한 금액은 원고 B의 위 2016. 11. 14.자 대여금채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대여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 B은 피고 D가 원고 A, B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함으로써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D를 고소하면서 그 피해내용에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2016. 11. 14.자 1억 2천만 원의 대여금채권 등을 포함시킨 사실, 원고 B은 2018. 8. 31. 고소인으로서 경찰에 출석하여 같은 고소인인 원고 A가 피고 D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투자사업을 운영하였고, 처인 원고 A 명의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처가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을가 제53호증), 검사는 2020.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 2019년 형제16300호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서 피고 D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6. 11. 14. 원고 B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가 제50호증, 위 편취하였다는 돈 1억 2천만 원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2016. 11. 14.자 1억 2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제기로 인한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68호)에서 원고 B은 원고 A 명의로 피고 D에게

투자한 돈들은 그 채권자 명의가 원고 A로 되어 있더라도 원고 B이 피고 D 사이에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가 제51호증), 이후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 D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D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갑 제79호증, 을가 제56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B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도하에 피고 D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법률적인 효과는 자신이 아닌 원고 A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D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법률적인 효과가 원고 A가 아닌 원고 B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 F이 회생채무자 F의 관리인 F을 수계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회생채무자 F의 관리인 F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 담, 판사 이재희, 판사 유제민